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식유촌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청 원 번 호	37
------------	----

2025. 12. 17.
주택공간위원회

I . 심사경과

- 청 원 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로 551 천주교 우면동 성당
백운철(스테파노 신부) 외 9,518명
- 소개의원 : 최호정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접수일자 : 2025. 12. 15.
- 회부일자 : 2025. 12. 16.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12. 17. 상정·의결)

II . 청원요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24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2,211,333m^2$ 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만 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 이 계획에는 송동·식유촌 마을과 천주교 12지구 성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과 신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면 수용 및 철거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주민 참여 원칙 위배, 공익과 사익의 현저한 불균형, 환경적·역사적 보전가치 훼손의 심각성 등의 우려가 있어,
- 청원지역 주민들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서초구 우면동 송동·식유촌 마을과 천주교 12지구 성당을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시켜 줄 것을 청원함.

III.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최호정 의원)

- 본 건 청원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수백 년 역사의 송동·식유촌 마을과 천주교 제12지구 성당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임. 본 청원은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환경 가치를 보전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계획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지역은 최소 500년 이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곳으로, 주민 및 신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면 수용 및 철거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 청원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감수해왔으며, 이제는 삶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해 있음.
- 청원 지역 주민들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래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왔음. 건축물의

44.8%가 40년을 초과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노후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삶의 터전 전체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수백 년간 형성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임. 이는 과거 취락지구 지정 등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인 처사임.

-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를 이유로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음.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사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미 결정된 계획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행정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 시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행정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음. 이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 청원 지역은 전체 사업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고 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잔여 부지의 계획 조정을 통해 당초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음. 반면, 사업 강행 시 주민들은 수백 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의 침해를 입게 됨.

- 청원 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녹지가 포함되어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맹꽁이의 서식지가 확인되었음. 송동·식유촌 마을은 최소 500년 이상 지속된 역사적 삶의 터전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마을의 유·무형적 자산과 공동체는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 또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귀중한 국가 유산의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청원 지역은 합법적으로 형성된 주거지로, 전체 사업지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나머지 부지의 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 사업 목적 달성을 큰 지장이 없음. 또한, 전면 수용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이주·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현저히 유익함.
-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부당한 계획임. 회복 불가능한 공동체의 파괴와 역사·환경

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막대한 사익 침해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큼의 압도적인 공익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청원인들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서초구 우면동 송동·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제12지구 성당을 강제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드시 존치시켜줄 것과, 주거안정과 공동체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안적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 국토부로부터 위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울시에 전달해줄 것을 청원함.

IV.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가. 청원 경위 및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요

- 이 청원은 2025년 12월 15일 최호정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소개로, 서초구 중앙로 551 천주교 우면동 성당 백운철(스테파노 신부) 외 9,5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1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8)」의 후속조치로 ‘서울 2만호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서초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 중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서초구 우면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원자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2,211,333m^2$ (66.8만평) 규모에 총 2만 세대(1지구 1만 8천세대, 2지구 2천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는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요>

구 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면적	2,211,333m ² (66.8만평)	
도시계획 현황	자연녹지(99.9%), 제1종전용주거지역(0.1%), 개발제한구역(100%)	
주택공급 목표	20,000세대 (서리풀 1지구 18,000세대, 서리풀 2지구 2,000세대)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환경부	
사업주체	LH공사 : SH공사 (5:5 분담)	
사업기간	2026년(지구지정) ~ 2035년	

나. 청원 대상지 현황 및 청원 취지

- 청원 대상지는 서초구 우면동 내 우면동성당 및 취락지구 2개소 일대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중 2지구에 포함됨.¹⁾
 - 청원지역 일대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1978년 경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2009년 취락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음. 송동마을 취락지구는 20,745m²로 84개필지, 건축물 37개동이며, 식유촌마을은 20,860m²로 71개필지, 건축물 37개동임.
 - 서리풀2지구 면적은 193,259m²,(약 5만8천평)으로 전체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임. 그 외 개발제한사항으로는 보전산지 25%, 비오톱 1등급지 13%를 포함하고 있음²⁾

1) 서리풀2지구 및 청원대상지 일대 현황 자료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5p에 제시된 ’계획지구 전경 및 현황사진‘에 청원인이 밝힌 우면동성당 및 2개마을의 위치를 표기한 것임.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지침서 제2권 계획지침 3p.

<서리풀2지구 및 청원대상지 일대 현황>



- 청원인은 송동·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제12지구 성당을 강제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드시 존치시켜줄 것과, 주거안정과 공동체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안적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음.

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24년 11월 5일 정부 발표와 동시에 11월 26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였고, '26년 상반기에 지구지정 완료, '29년에 첫 분양, '32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중임.
- 올해에는 전략환경평가준비서 국토교통부 제출(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9.2.~10.10.), 서리풀1지구 전략환경 평가초안 공청회(11.17.) 등을 진행하였고,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평가초안 공청회(11.24. 개최무산, 12.12. 개최예정)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또,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³⁾의 재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신청을 위한 관계기간 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임(검토보고서 불임3 참고).

라. 기존 청원의 처리 경과

- 지난 2025년 1월 31일 제출된 청원번호 21번 ‘송동·식유촌(우면동) 및 새쟁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2.25.)에서 채택되었음.
 - 이후 집행기관의 처리결과 보고⁴⁾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에 청원 채택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포함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과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주 주택·택지, 대토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과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왔음.

마. 청원의 내용 검토

- 청원의 내용은 크게 ①주거권·재산권의 침해, ②절차적 정당성 결여, ③공익과 사익의 불균형(비례의 원칙 위반), ④환경적·역사적 보전가치 훼손의 심각성, ⑤「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 상 존치 요건 충족 으로 구분되며, 청원번호 21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임.(「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1항, 제4항)

4) 공공주택과-5614(2025.5.16.),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채택 청원 처리결과 제출

구분	검토내용
①주거권· 재산권의 침해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40년 이상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한 주민들의 주거권 고려가 필요함과, 전면철거방식의 개발로 인한 무허가 정착지 발생과 또다른 개발사업 추진 등 악순환을 지적하고, 주민의 주거권과 거주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검토
②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근거한 것으로,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것이 법적·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시 거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노력을 촉구
③공익과 사익의 불균형	청원지역을 공공주택지구 내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존 취락지구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과,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일부 지역을 고밀개발하도록 변경한다면 당초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검토 ⁵⁾
④환경적 특성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화평가등급을 검토하였고, 3~5등급 수준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았음. 다만, 금번 청원대상지인 송동·식유촌과 직접 면한 지역은 상당수가 환경영화 평가 1등급으로, 지역 일대의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청원 지역의 존치도 고려해볼 수 있음으로 검토

5) 다만, 청원지역인 3개 마을이 전체 사업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은, 당시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 원문(청원요지)에 포함된 사항임.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지구지정시 지구 전체의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환경친화적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계획지구 경계 검토 지구계 대안 (1안으로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17p)

〈표 3-5〉 지구계 대안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지구경계		
면적	• 193,259m ²	• 176,811m ²

- ⑤존치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21조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서 존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지침상에 제시된 존치요건 기준은 기반시설과의 연계, 건축물의 관리상태, 보상액 규모 등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 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제12조의5(건축물의 존치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
2. 주거용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
3.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청사와 학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문화유산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4.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영 제21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당 건축물 등이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영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현재 청원대상지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취락지구로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취락과 성당의 존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임. 그러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래 제도의 취지와 일정 부분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서울시의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도시 확산과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내 실제 주택 부족 여부,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바. 종합의견

- 이번 청원은 같은 취지의 기존 청원(청원21번)과 달리, 청원의 주체가 지역 내 종교시설(우편산성당)을 포함하고, 청원자의 규모 또한 당초 1,798명에서 9,51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짐.
- 이는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에 있어 주민의 거주안정성 확보와 지역유산 및 지형을 활용하는 등 지역별 정체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제적 토지수용’보다는 ‘주민의견 수용’을 우선하여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필요를 다시한 번 재확인한 것임.

- 이에 청원지역을 공공주택지구 내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존 취락지구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상 존치요건이 다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재 청원대상지 내 건축물의 존치가능여부가 서로 상이할 수 있는 점, 존치할 경우 존치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집행부서는 조속히 검토,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리풀 1지구 내 본 청원대상지와 유사한 취락지구가 존재하므로, 각 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여부 및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시점으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지구 경계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됨. 이에 서울시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존 취락지구를 존치하면서 지구 경계변경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음.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생략

VII.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의견서 : 별첨

[별첨]

의견서

- 청원명: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식유촌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주택실)
- 채택의견
 - 주택공간위원회는 송동·식유촌 및 천주교 12지구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외를 요청한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 향후 서울시가 지역주민, 자치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서식4-6-3> 청원요지서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37		접 수 연 월 일	2025. 12. 15.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성 명	백운철(스테파노 신부) 외 9518명		
소개의원	최호정		소속위원회	의장
건 명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주택공간			
<p>○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식유촌 마을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p> <p>-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24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2,211,333㎡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만 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 이 계획에는 송동·식유촌 마을과 천주교 12지구 성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과 신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면 수용 및 철거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p> <p>- 이는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주민 참여 원칙 위배, 공익과 사익의 현저한 불균형, 환경적·역사적 보전가치 훼손의 심각성 등의 우려가 있어</p> <p>- 청원지역 주민들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서초구 우면동 송동·식유촌 마을과 천주교 12지구 성당을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시켜 줄 것을 청원함</p>				